

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「항만법 시행령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